

쿠웨이트(Kuwait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76년(민간인), 1977년 시행; 1980년(군인), 1981년 시행; 1992년(보완), 1995년 시행; 2014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기본연금 : 공공, 민간, 및 석유부문 근로자, 자영자, 및 군인; 걸프협력회의(GCC) 국가 (바레인(Bahrain), 쿠웨이트(Kuwait), 카타르(Qatar), 사우디아라비아(Saudi Arabia), 아랍 에미리트 연합(United Arab Emirates))에서 근무하는 쿠웨이트 국민
- 보조연금 : 월 소득이 1,500 디나르(dinars) 이상인 근로자
 - 예외 : 자영자
- 보수연금 : 근로자
 - 해외 근로 또는 외교사절단 및 국제기구 소속 쿠웨이트 국민 임의적용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기본연금 : 월 가입소득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230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보조연금 : 월 가입소득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1,501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750 디나르(dinars)
 - 월 소득의 최대 2,750 디나르(dinars)까지에 대한 2.5%가 추가적으로 기본 및 보조연금을 위한 급여조정 재원으로 사용
 - 보수연금 : 월 가입소득의 2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보수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가입기간 18년 후부터 중지됨

○ 자영자

- 기본연금 : 총 27개의 소득구간 분류 상 자영자가 속한 구간에 따라 월 가입신고소득의 5~1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200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월 소득의 최대 1,500 디나르(dinars)까지에 대한 3.5%가 추가적으로 기본연금을 위한 급여조정 재원으로 사용
- 보조연금 : 적용 불가
- 보수연금 : 월 가입신고소득의 2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보수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가입기간 18년 후부터 중지됨

○ 사용자

- 기본연금 : 월 가입임금지급액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230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- 보조연금 : 월 가입임금지급액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1,501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750 디나르(dinars)
 - 월 소득의 최대 2,750 디나르(dinars)까지에 대한 1.0%가 추가적으로 기본연금을 위한 급여조정 재원으로 사용
- 보수연금 : 없음

○ 정부

- 기본연금 : 재정부족 총당; 월 임금지급액의 10%(공공부문 근로자), 월 임금지급액의 32.5%(군인), 월 신고소득의 25% - 자영자 보험료 납부금액(자영자)
- 보조연금 : 월 가입임금지급액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1,501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2,750 디나르(dinars)
 - 월 소득의 최대 2,750 디나르(dinars)까지에 대한 2.5%가 추가적으로 기본 및 보조연금을 위한 급여조정 재원으로 사용
- 보수연금 : 월 가입임금지급액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보수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가입기간 18년 후부터 중지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 : 연금은 기본연금, 보조연금, 보수연금으로 구성

- 기본연금 :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53세(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55세 도달);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49세(남성 및 무자녀인 미혼 여성, 2020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55세 도달);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48세(기혼 여성 및 자녀가 있는 여성,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55세 도달); 고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며 장애자인 남편이나 자녀를 돌보는 여성은 연령무관;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60세 또는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55세인 자영자;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인 50세 또는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45세인 군인
 - 최대 기본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인 경우 지급(군인에게는 27.5년)
 - 연기기본연금 : 가입자가 일반 퇴직 연령 이후 계속 근로한다면, 기본연금 연기 가능. 나이 제한 없음
 - 기본 노령연금은 해외지급이 불가
 - 보조연금 : 가입자가 노령 기본연금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
 - 연기보조연금 : 가입자가 일반 퇴직 연령 이후 계속 근로한다면, 보조연금 연기 가능.
 - 보조노령연금은 해외지급이 불가
 - 보수연금 : 기본 또는 보조노령연금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14년 이후 최소 24개월의 가입기간 필요(예외경우 존재); 자영자는 일반 퇴직 연령에 기본 또는 보조 노령연금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가입기간이 최소 1년이거나, 기본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함
- 장애연금 : 연금은 기본연금과 보조연금으로 구성
- 기본연금 및 보조연금 : 최소 50%의 근로능력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함
 - 종합의료협회가 근로능력불능 정도를 판정함
 - 기본 및 보조 장애연금은 해외지급이 불가함
- 유족연금 :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; 장애자이며 근로능력불능인 피부양 홀아비; 26세 이하의 아들(학생일 시 28세, 장애자일 시 연령제한 없음); 연령무관 미혼인 딸;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 부모, 형제, 자매 및 손주 포함
 - 유족연금은 (재)혼인 시 중지되며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이혼하거나 미망인/홀아비가 될 시에 재개
 - 혼인수당 : (재)혼인 시, 사망자의 딸 혹은 자매, 또는 사망자 아들의 딸에게 지급됨
 - 유족연금은 해외지급이 불가함
- 사망수당 :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 사망 시 지급
- 사망수당은 해외지급이 불가함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 : 연금은 기본연금, 보조연금, 보수연금으로 구성
 - 기본연금 : 월 연금액은 1) 가입자의 마지막 월 소득의 65% (군인은 75%) 또는 2) 마지막 3년간 월 평균 소득의 65% + 가입기간 15년을 초과하는 각 년도마다 2% (자영자는 최대 95%, 군인은 최대 100%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230 디나르(dinars); 자영자에게는 200 디나르(dinars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1,500 디나르(dinars)
 - 연기기본연금 : 기본연금 정액에 추가로 가입기간 30년 기준 5년 초과 시 마지막 연 소득의 10%, 추가 5년 초과 시 (총 10년 초과) 12%, 다음 5년 초과 시 15% (총 15년 초과), 그 이후 추가 1년 초과 시 20% (총 16년 이상 초과)의 일시금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에 대한 고정요금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짐
 - 보조연금 : 월 연금액은 <(가입기간 전체 동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25~30%(연령에 근거하여) + 가입기간 각 년도에 대하여 5%) ÷ 202 디나르(dinars)에서 120 디나르(dinars)까지의(가입자 연령에 근거하여) 고정된 양>
 - 보조연금의 일부가 6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
 - 연기보조연금 : 연기되는 각 년도마다 5%씩 연금은 증가
 - 급여조정 : 급여에 대한 고정요금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짐
 - 월 기본 및 보조연금 합 의 최저금액은 577 디나르(dinars)(여성 및 독신 남성)에서 990 디나르(5명 이상의 피부양 자녀가 있는 남성) 사이
 - 보수연금 : 연금은 <기본연금 산정을 위한 가입자의 소득 × 최대 18년까지의 가입기간 연수>에 근거하여 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 : 연금은 기본연금 및 보조연금으로 구성
 - 기본연금 : 월 연금액은 1) 가입자의 마지막 월 소득의 65% (군인은 75%) 또는 2) 마지막 3년간 월 평균 소득의 65% + 가입기간 15년을 초과하는 각 년도마다 2% (자영자는 최대 95%, 군인은 최대 100%).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59세까지로 인정됨
 - 급여조정 : 급여에 대한 고정요금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짐
- 보조연금 : 월 연금액은 <(전체 가입기간동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5~30%(가입자 연령에 근거하여) + 가입기간 각 년도마다 5%) ÷ 202 디나르(dinars)에서 120 디나르(dinars)까지의(가입자 연령에 근거하여) 고정된 양>
 - 보조연금은 <전체 가입기간동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5~25%(가입자 연령에 근거하여) + 가입기간 각 년도마다 5%>에 근거하여 산정
 -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59세까지로 인정
 - 급여조정 : 급여에 대한 고정요금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짐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 :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분류와 수에 근거하여,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연금의 100%(기본, 보조, 보수연금)가 지급됨. 법에 의해 규정된 비율대로 유족연금은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 사이에 나누어짐
 - 최저 월 유족연금액은 미망인 또는 피부양 미망인에게는 250 디나르(dinars); 각 부모에게 196 디나르(dinars);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각 126 디나르(dinars)
 - 유족연금은 유족이(미망인 제외) 근로를 시작할 시 일시 중지되거나 중단됨
 - 유족의 수급자격이 정지된다면, 남아 있는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 사이에 연금이 나누어짐
 - 혼인수당 :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유족연금에 대한 지분의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. 수당은 각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오직 한 번씩만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에 대한 고정요금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짐
- 사망수당 : 수당은 사망자의 마지막 월 소득 또는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연금(기본 및 보조연금)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임
 - 최저 사망수당은 230 디나르(dinars)

7 **관리운영기관**

- 사회보장공공기관(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)
 - <https://www.pifss.gov.kw/>
 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 - 재무부 장관이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회에 의해 관리됨

<2018년 ISSA 자료>